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내규

제정 : 2013. 03. 01
개정 : 2026. 04. 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및 동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내규의 적용 대상은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소속 재적생으로 한다.

제2장 학위 과정

제3조(학위과정 선택)

① 학위 과정은 **"학위논문제출" 과 "논문대체"** 의 두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② 학위 과정의 선택은 2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학과주임교수와 상의하여 해당 신청서를 교학행정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위과정 승인을 받은 자는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로부터 학위과정 이수에 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4조(학위 과정의 변경)

① 학위 과정의 선택은 "학위취득과정 신청서" 를 제출한 후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 하고자 할 경우,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학위 과정 변경 신청을 원하는 자는 아래 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8>

변경 신청 구분	신청기한
논문제출 ▶ 논문대체	4학기 학기 개시 후 1주일 이내
논문대체 ▶ 논문제출	3학기 학기 개시 후 1주일 이내

② 학위과정의 변경에 따라 추가로 학점(연구지도 학점 포함)을 신청할 경우, 추가로 수강신청 하는 학점이 3학점 이하일 때에는 수업료의 2분의 1, 4학점 이상일 때에는 수업료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수업 및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한다. 다만, 2010학년도 2학기 이전 입학한 학생은 2년 6개월(5학기)로 한다.

제6조(재학연한)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의 재학연한은 5년으로 하며, 휴학 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2010학년도 2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재학연한을 5년 6개월로 한다.

제4장 등록 및 학적변동

제7조(등록)

① 수업연한을 경과하고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업연한 경과자에 대한 등록금은 수강신청 학점이 3학점 이하일 때에는 수업료의 2분의 1, 4학점 이상일 때에는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금 대체 및 반환)

① 신입생 및 군 입대 휴학생의 경우 우리 대학교 학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 및 그 밖의 납입금을 대체 받을 수 있다.

② 수업료를 납입한 후 자퇴하는 자는 우리 대학교 학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를 반환한다. 다만, 징계에 의한 제적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업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휴학)

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 학기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한 학기를 1회로 하며 연속하여 2개 학기를 휴학할 수 없다.

③ 휴학원서 제출은 매 학기 종강일 이후부터 다음 학기 개강 후 5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휴학 횟수는 재학 기간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임신·출산·육아 및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학 횟수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⑤ 질병, 군복무 또는 해외근무 및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학기간은 제2항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복학하여야 한다.

② 복학원서는 매학기 정해진 기간(2월, 8월)에 신청하여야 하며,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③ 복학원서 제출 시 군 전역자는 전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제적 및 자퇴)

①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② 휴학기간을 초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③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장의 승인으로 자퇴를 허가한다.

제12조(학과 변경)

① 학과 변경은 입학 후 1개 학기 경과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취득한 학점은 새로운 학과 또는 전공의 교육 과정에 상응하는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신·구 학과주임교수 또는 신·구 지도교수의 승인이 확인된 '학과변경신청원'을 교학행정팀에 제출하고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장이 학과 변경 허가 여부와 전항의 인정과목을 결정한다.

제5장 학점 취득

제13조(학기당 취득 학점)

① 학기당 취득 학점은 최대 9학점으로 한다. 단, 연구지도 학점은 추가 인정한다.

② 연구지도학점은 3학기부터 이수한다.

③ <삭제 2026.04.07>

제14조(졸업요구 학점)

① 학위논문 과정 요구 학점은 공통과목 6학점, 전공과목 18학점, 연구지도 6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5.3.31., 2026.04.07>

【학위논문】<개정 2026.04.07>

학기	공통과목	전공과목	연구지도	계
1	3학점	6학점		9학점
2	3학점	6학점		9학점
3		6학점	3학점	9학점
4			3학점	3학점
계	6학점	18학점	6학점	30학점

② 전공은 최소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과목의 교차수강은 최대 6학점까지 이수가 가능하다.<개정 2026.04.07>

③ 공통과목은 2개 과목을 반드시 선택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6.04.07>

④ 논문대체 과정 요구 학점은 공통과목 6학점, 전공과목 18학점, 논문대체 6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논문대체이체 과목은 반드시 본인 학과에서 개설한 전공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3.31.><개정 2026.04.07>

【논문대체】<개정 2025.3.31., 2026.04.07>

학기	공통과목	전공과목	연구지도	계
1	3학점	6학점		9학점
2	3학점	6학점		9학점
3		6학점		6학점
4		6학점(학점이수)		6학점
계	6학점	24학점	0학점	30학점

제15조(성적 평가) 학업성적의 평가는 다음 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성적등급 F는 학점취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점 수	100~95이상	95미만~90이상	90미만~85이상	85미만~80이상	80미만~75이상	75미만~70이상	70미만
등 급	A+	A	B+	B	C+	C	F
평 점	4.5	4.0	3.5	3.0	2.5	2.0	0

제16조(학점 인정)

① 수강과목의 성적이 70점 이상일 때만 학점취득으로 인정한다.

② 재입학생이 재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한다.

③ 매학기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수업시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학점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장 학위취득 자격시험

제17조(자격시험)

① 학위를 취득하려는 자는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에서 시행하는 “학위취득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학위취득 자격시험은 “영어시험”과 “종합학력시험”으로 한다.

제18조(영어시험)

① 영어시험은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이 주관하여 시행한다.

② 시험은 1학기를 이수한 후부터 응시할 수 있다.

③ 성적평가는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불합격한 자는 횟수에 관계 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

④ 영어시험의 면제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영어 <개정 2025.11.28>

공인시험	TOEIC	TEPS	New TEPS	TOEFL			OPIc	TOEIC Speaking	G-TELP Lv.2
				PBT	CBT	IBT			
취득점수	700	566	264	532	213	80	IM2(4단계)	IM3(130)	63

※ 매년 3월1일, 9월1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에 한함.

2.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의 경우 영어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25.11.28>

제19조(종합학력시험)

① 종합학력시험은 학과주임교수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시험지와 채점한 답안지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교학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험과목은 전공분야의 학력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2개 과목으로 한다. <개정 2026.04.07>

③ 응시자격은 전공학점(공통포함)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개정 2026.04.07>

④ 성적평가는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불합격 과목에 대해서는 횟수에 관계 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

제7장 논문 제출

제20조(논문지도교수의 선정)

① 학위논문을 작성하려는 자는 2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정한 후, 논문지도교수 승인신청서를 교학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2년 이내에 정년퇴직하지 않는 전임교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교원 및 대학원에 출강하는 강사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04.07>

③ 논문지도교수의 변경은 논문심사신청 제출 1학기 전에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04.07>

제21조(논문심사 신청) 학위논문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학과주임교수와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장에게 소정의 심사신청서, 서약서 및 심사용 논문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논문심사) 학위논문의 심사는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으로 심사위원 3인으로 구성하고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논문재심사)

① 학위논문 심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논문은 학위논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학위과정의 수료만을 인정한다.

제24조(논문제출)

① 학위청구논문은 재학연한 이내에 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논문제출 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학위청구논문 제출 기간 이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으로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승인된 학기로부터 3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학위논문 심사의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학위논문을 일정 부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8.>

제25조(학위취득 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학위취득 자격을 갖춘 것으로 한다.

1. 공통과목 6학점, 전공과목 18학점, 연구지도 6학점을 포함해 3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전 과목의 성적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 <개정 2026.04.07>
2. 외국어시험 및 종합학력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26.04.07>
3. 연구윤리교육 이수자로서 학위논문심사에 통과한 자

제8장 논문 대체

제26조(논문대체 학위취득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논문대체 과정으로 학위취득 자격을 갖춘 것으로 한다.

1. 공통과목 6학점, 전공과목 18학점, 논문대체 6학점을 포함해 3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전 과목의 성적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 <개정 2025.3.31., 2026.04.07>
2. 논문대체 2과목 6학점은 본인 학과에서 개설한 전공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각 과목의 성적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3.31., 2026.04.07>
3. 외국어시험 및 종합학력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26.04.07>

② <삭제 2025.3.31>

③ <삭제 2026.04.07>

제27조(등록금 납부)

① 논문대체 과정자가 추가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료자가 학위취득 방법을 변경하여 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이 3학점 이하일 때에는 수업료의 4분의 1, 4학점 이상일 때에는 수업료의 2분의 1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장 학위 수여

제28조(학위수여)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의 학위는 학위과정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취득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심사 또는 논문대체 과정에서 요구하는 학위취득 요건을 갖춘 자

를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제29조(학위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 또는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학위과정 수료)

① 수료라고 함은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위취득자격에 필요한 졸업요구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전 과목의 성적평균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료 인정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

제10장 장학금 및 장학생선발위원회, 상벌

제31조(장학금)

①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에서 정한 장학금 지급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장학금은 매 학기 정해진 신청기간 내에 장학금신청서와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교학행정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별과정 장학금 운영은 특별과정 운영내규에 따른다.<신설 2026.04.07>

제31조의 2(장학생선발위원회)

①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장학금 지급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학생선발위원회를 둔다.

② 장학생선발위원회의 기능은 신입생 및 재학생의 장학금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장학생 선발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장이 주임교수 중에서 위촉한다. 위원장은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장으로 하며 간사는 교학행정팀장으로 한다.<개정 2026.04.07>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장학생선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징계) 학생으로서 그 본분과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11장 운영위원회

제33조(운영위원회)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3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장이 된다. 학과주임교수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교학행정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35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논문지도 및 학위수여 등에 관한 사항
2. 학과(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명칭변경 등 교육편제 조정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과목 개설 및 교·강사 배정에 관한 사항

4.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에 관한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6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발령 또는 위촉기한으로 하며 추가 위촉 위원은 매 학년도 단위로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7조(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장 학과운영위원회

제39조(학과운영위원회)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소속 학과 중 주임교수를 특별교원 또는 비정년트랙 교원으로 위촉한 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과운영위원회를 둔다.

제40조(학과운영위원회 구성)

① 학과운영위원회 위원은 해당 분야 전임교원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하고 소속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학과주임교수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1조(위원장)

① 위원장의 임기는 주임교수 위촉기한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한 사항은 소속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42조(학과운영위원회 기능) 학과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논문지도 및 학위수여 등에 관한 사항
2. 학과(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명칭변경 등 교육편제 조정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과목 개설 및 교·강사 배정에 관한 사항
4. 학과에 관한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3조(학과운영위원회 회의) 학과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소속 대학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장 내규 개정

제38조(내규 개정)

① 본 내규의 개정은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교과과정표, 교차수강표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개정 확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 3. 1. 부터 시행한다.(최초 내규의 대학원위원회 심의의결:2013.07.01.)
제2조(적용) 이 내규는 2013학년도 2학기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타) 이 내규에서 예시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부칙[2017.09.0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7.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5.1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 5. 19.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내규는 2018학년도 1학기 재적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09.1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 9. 15.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내규는 2018학년도 2학기 재적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03.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9. 3. 30.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내규는 2019학년도 1학기 재적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09.0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0.09.04.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내규는 2020학년도 2학기 재적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12.2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0.12.23.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내규는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04.1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3.04.12.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내규는 2023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12.0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3.12.0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03.3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5.03.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내규는 2024-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25.11.2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5.11.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04.0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6.04.07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2026.04.07.]

장학명		지급기준	지급대상
*교내 장학금	학사조교A	수업료 100%	우리 대학교 학사조교A
	학사조교A-1	정액	
	실험실습보조TA	정액	우리 대학교 실험실습보조TA(수업조교)
	양영장학금	수업료 50%	학교법인 단국대학 산하 재직 교직원(정규직)의 자녀 (대학, 단국대의료원, 치과대학 부속병원, 단대부속 중고등학교)
	단국장학금	입학금 100%	본교 학부졸업자(학점은행제 졸업자 제외)
	군위탁장학금	수업료 50%	군위탁생(정원 외)
	공무원위탁장학금	수업료 50%	공무원위탁(정원 외)
	대내장학금	수업료 15%	일반재학생
		수업료 20%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기업체 재직자
		수업료 40%	본교 학부졸업자
		수업료 50%	본교 직원(계약직)
		MOU협약에 따름	MOU협약에 의한 기관 및 기업
	봉사장학금 (원우회)	수업료 70%	원우회장
		수업료 60%	원우회 부회장
		수업료 50%	원우회 임원
	대학원 복지장학금	수업료 50%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자,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장학금은 등록 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내장학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총 5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장학금 대상자는 매 학기 정해진 신청 기한 내에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장학금 혜택이 있음
* 단국대학교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 재직 교직원(정규직)은 단체협약 사항에 따른다.
* 장학금 지급대상에 대한 적격여부는 우리대학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결정함
* 그 이외의 사항은 학칙에 준한다.